

작성 부서	안전관리단	작성자 (연락처)		☎
				☎
				☎

2019년 안전보건공단 안전기본계획(안)

2019. 6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목 차



I. 추진 개요	1
II. 기본 현황	2
III. 2018년 안전관리 추진 실적 및 평가	13
IV. 2019년 안전관리 추진전략 및 목표	16
V. 2019년 안전관리 추진계획	17
VI. 행정사항	40
VII. 기타	41
참고자료	42

I. 추진 개요

1 추진 근거

-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공운위 의결, '19.3.28)
 - * '19년 6월말까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부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

2 수립 목적

- ☐ 공단 임직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체계적 안전관리 실현
- ☐ 공단 발주 공사 노동자 및 공단 시설 이용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3 기본 방향

- ☐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
 -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명확히 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
 - 사고성 재해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 추진
 - * 사고성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정부정책 및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적극 이행
- ☐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 안전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 ☐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임직원, 하청(협력업체) 직원 및 발주 공사 현장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 ☐ 교육원, 체험교육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4 수립 대상 분야

- ☐ 공단의 사업, 시설물 등의 안전
- ☐ 공단 발주 건설현장 및 시설 유지·보수 현장 등의 안전
- ☐ 재난안전분야 관리 및 대응 등

II. 기본 현황

1 공단 업종 분류

□ 추진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적용 규정을 달리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 공단의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명확히 하여 기관특성에 맞는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필요

□ 업종 분류 및 산안법 적용제외 규정

가. 공단의 표준산업분류 업종 확인 경과

- 통계청(통계기준과) 업종 분류 확인

- 통계청 유선확인('17년 9월, '19년 5월 2회 확인) 결과 ‘공공행정’ 업종으로 분류한다는 구두 답변 회신

- 통계청에 공문으로 업종 확인 추진

*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확인 협조 요청(안전관리단-45, 2019. 5.20)

☞ 공단은 산안법 위탁업무(산안법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를 수행하는 특성상 ‘공공행정’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선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인증, 검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 회신(통계기준과-1560, '19. 6.10)

나. 공단 업종 적용 방안

- 기관별 사업 수행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 적용

- 본부 : ‘공공행정’

- 교육원 : ‘교육서비스업’

- 연구원(울산), 연구원(대전 화학물질센터) : 연구개발업

- 인증원,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장 단위(산재관리번호 부여 기준)로 안전관리 실시

다. '공공행정' 등 업종 적용시 산안법 적용제외 항목

【공공행정(본부), 교육서비스업(교육원)】

- 안전·보건 관리체제 미적용(산안법 제13조~제19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적용(산안법 제20조~제22조)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미적용(산안법 제29조)
 -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제공 협조' 규정은 적용(산안법 제29조 제9항)
- 안전보건교육 미적용(산안법 제31조, 제32조 등)

【연구개발업, 50인 이상 100인 미만 해당(연구원(울산, 대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보위 미적용(산안법 제13조, 제19조)
 -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적용(산안법 제20조~제22조)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0인 미만 해당(인증원, 산하기관)】

- 안전·보건 관리체제 미적용(산안법 제13조, 제15조~제19조)
 - * 관리감독자 선임
 - ** 시행령 [별표 3], [별표 5]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적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적용(산안법 제20조~제22조)
- 안전보건교육 미적용(산안법 제31조, 특별교육 실시는 적용)

추진 방향

◆ 산안법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 추진

- 안전관리체제, 규정 등 산안법 적용 대상 업종은 아니나, 산안법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기준 이상으로 안전관리 추진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

2 재해 · 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 ('19년 6월말 기준)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월말)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수	직영							
		하청							
		건설발주							
		소계							
	사고 사망만인율(발주)								
	사고 부상자 수	직영							
		하청							
		건설발주							
		소계							
안전 사고	사망자 수								
	부상자 수								

○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단 직원, 하청업체, 발주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 등 총 부상자가 발생

- 공단 직원 사업 수행 시 총 의 부상자 발생

* 다양한 재해 발생(체육행사, 폭력행위 관련 재해는 제외)

- 공단에서 외주 운영중인 식당에서 00 부상자 0 발생

- 건설공사발주와 관련해서는 '18년 00교육장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상자 발생

- 공단 체험교육장에서 교육 중 교육생 안전사고(부상자) 발생

* 다양한 재해 발생

시 사 점

- ✓ 공단 직원의 '18년도 재해율은 0000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직원 및 국민 재해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 공단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심 경주 필요
- ✓ 공단 식당 및 직원 사업수행에 대한 안전절차를 마련,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재해 예방
- ✓ 체험교육장 등 국민 이용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세부 현황

구분	사업장명	재해일자	요양승인일	발생형태	재해개요(요약)	비고

3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사업장

□ 안전관리 대상 시설 : 총 11개

○ 시특법상 시설물 : 00개 (제2종 시설물 00개)

- 본부(센터권 포함) : 연면적 000 으로 00 시설임

* 대상 기준 :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 재난관리법상 국가기반시설 : 해당 없음

* 국가기반시설 구분 9개 분야에 비해당

○ 기타 타 법령에 따른 관리시설물 : 10개

□ 안전관리 대상 시설 세부 현황

○ (시특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 1개

√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 공단 본부 및 센터권 청사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 기타 타법령에 따른 관리시설물 00개

- (분야) 기계설비, 전기설비, 환경위생 00개로 구분
- (시설물) 보일러, 가스시설, 승강기, 물탱크 등 00개(청사 포함)
-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등 00개

분야	설비명	내용(근거)	시행 시기	비고(수량)
기계 설비				
전기 설비				
환경 위생				

□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 총 00개소

- 본사 0개소
- 지역본부 및 지사 00개소

* [참고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현황

○ 건설공사 발주현장 : 없음

- 여수 체험교육장은 타당성 조사 중이며, '20년 설계 발주 예정
- 타워크레인 설·해체 교육 등을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은 '19년 하반기 추진 예정

4 안전 예산

□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합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 관련 연구개발 예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지원			
안전시설 신규 건설 및 투자			
기타 운영경비			

* 구분 기준 : 17년, 18년은 결산기준, 19년은 편성기준으로 작성

○ 공단 주요 사업은 국민 및 노동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해의 예방활동으로 공단 전체 예산을 안전 예산으로 판단

* 안전보건 재정지원(클린사업, 융자사업)은 고용부 집행 예산으로 제외

- 안전관리 예산 규모는 000백만원이며 총 예산 000백만원의 00%에 해당
- 전년('19년) 대비 00%(000000백만원) 증가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 0000억원

-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안전보건 기술지원으로 사고성 재해감소에 기여
- 분진, 화학물질 등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석면 등의 발암성물질 관리 지원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00억원

- 산재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
- 민간 재해예방기관 정보연계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 사이버 침해 위협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00억원

-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통한 사업장 자율안전보건활동 기반 구축
-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를 통한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
-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 안전 관련 연구개발 : 00억원

- 안전보건연구 , 산업재해통계, 선진산업 재해예방 기술정보 도입
- 작업장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주기적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 체계 확립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지원 : 00억원

-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인증
-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안전시설 신규 건설 및 투자 : 00억원

- 안전체험교육장 등의 산재예방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
-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을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

☐ 위험기반 시설 정비 등의 운영경비 : 00억원

- 공단 청사 내 위험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 임·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5 안전 전담 조직

☐ 안전관리 조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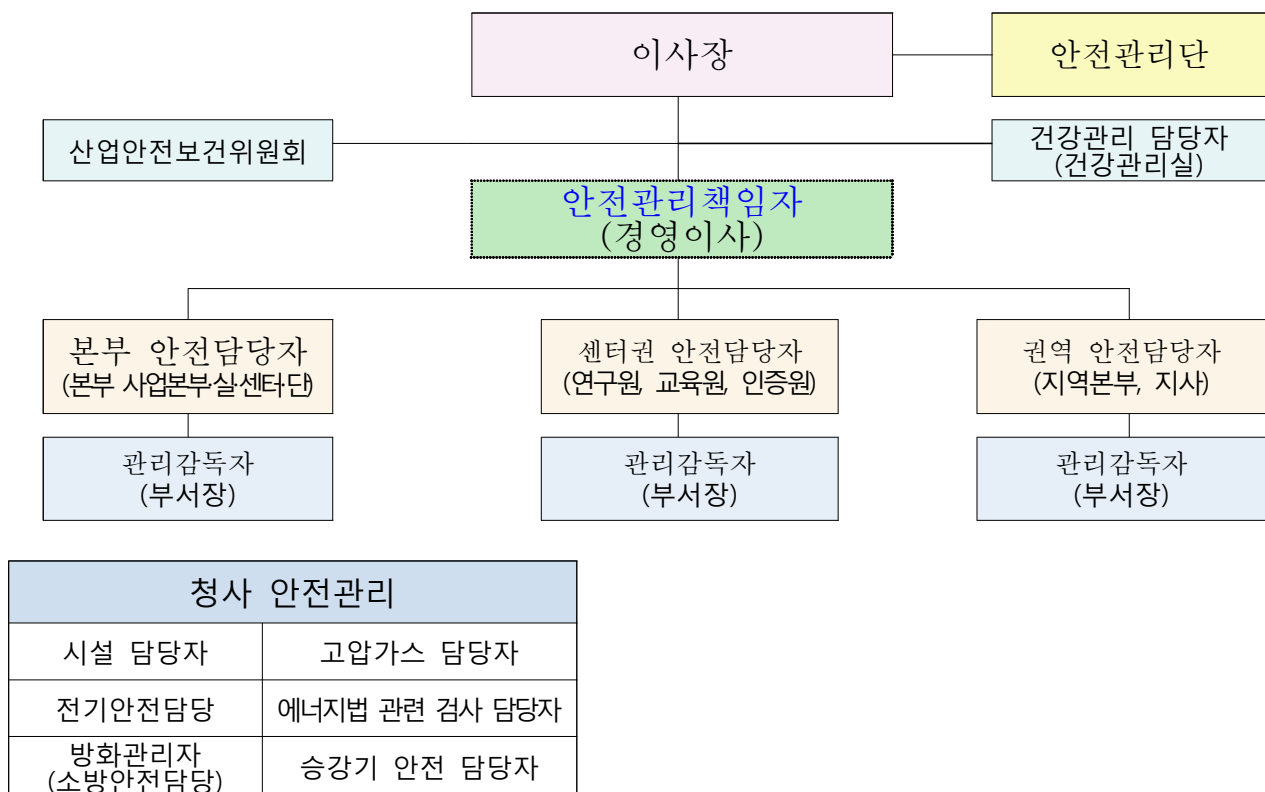
- 공단 본부 이사장 직속 안전관리단 신설·운영('19. 5. 1, 3명)

- 안전관리책임자, 일선기관 부문 안전담당자 지정 등 안전관리 체계 신설 구축

□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경영이사를 공단 안전관리책임자로 하고, 라인-스텝형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라인 조직 : 안전관리책임자, 부문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로 구성하여 안전관리 업무 추진
 - * 부문 안전담당자는 해당 기관(부서)의 주무부장이 해당되며, 관리감독자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해당
 - 스텝 조직 : 안전관리단(이사장 직속), 건강관리 담당자, 청사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

< 공단 안전관리 총괄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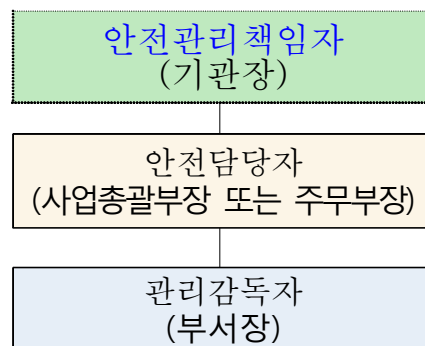
○ 주요 업무

구 분	직 책	주요 업무내용
안전관리책임자	경영이사	· 안전관리 업무 총괄
안전관리단	단장(겸임), 실무자 3명	· 안전관리 업무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환류
부문 안전담당자	본부 사업본부·실·센터·단, 일선기관 주무부장	· 부문 안전관리 업무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관리감독자	부서장	· 수행 사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부서원 안전교육 등
청사 안전관리 담당자	청사 시설관리 담당자	· 시설관리 업무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법정 검사 등 수검

□ 일선기관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기관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센터권, 일선기관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



○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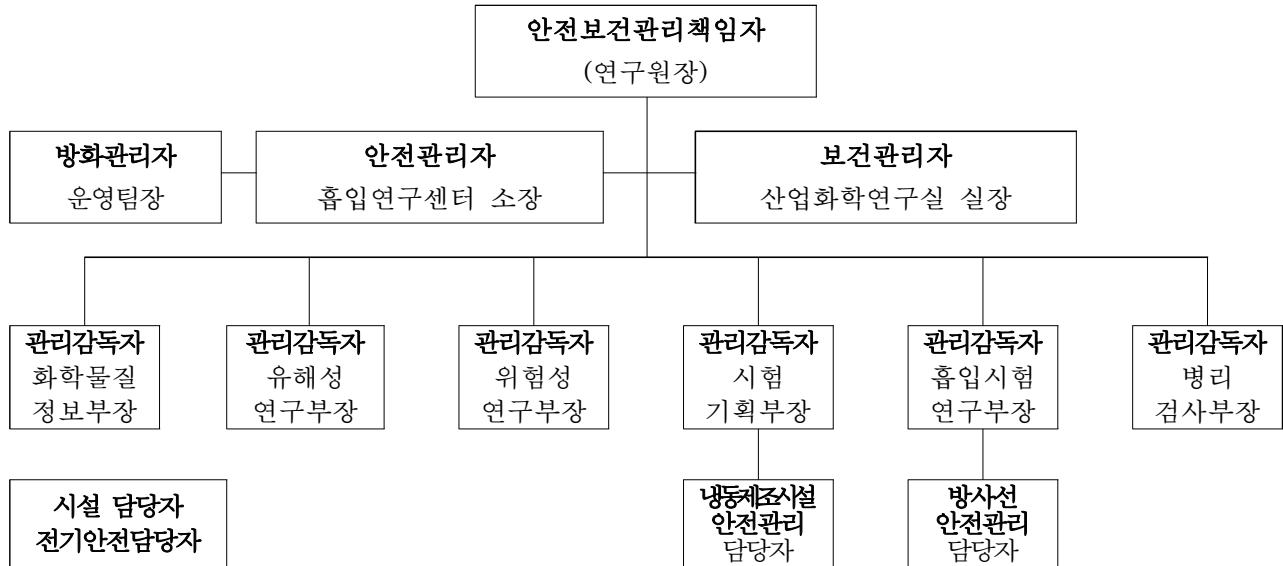
구 분	직 책	주요 업무내용
안전관리책임자	기관장	· 일선기관 안전관리 업무 총괄
안전담당자	사업총괄부장, 주무부장	· 부문 안전관리 업무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본부 안전관리관 업무 이행 및 협조 · 청사관리 업무 수행 등
관리감독자	부서장	· 수행 사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부서원 안전교육 등

□ 기관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는 산안법에서 정하는 직무 수행

* 산안법 요구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추진

< '19년 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안전관리 조직도(우수사례) >



6 안전 전담 인력

□ 총괄 현황

구분	2018		2019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위험 진단 인력				
안전 조치 인력				
교육 훈련 인력				
안전 기획 부서 인력				

※ 공단 전체 인원을 안전 전담인력으로 포함

□ 위험진단 인력 : 000명

- (본부) 전문기술실, 연구원, 인증원, 민간평가센터
- (일선기관) 화학사고예방센터 7개소

□ 안전조치 인력 : 000명

- (본부) 중앙사고조사단
- (일선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인력(화학사고예방센터 및 교육센터 제외)

□ 교육·훈련 인력 : 00명

- (본부) 교육원
- (일선기관) 교육센터 및 체험교육장 각 6개소

□ 안전 기획부서 인력 : 000명

- (본부) 본부 인력(전문기술실, 중앙사고조사단 제외)

□ 안전 전담인력 세부 현황(최근 2개년)

구분	기관	2018년		2019년	
		정원(명)	현원(명)	정원(명)	현원(명)
총 합계					
위험진단 인력 (A)	전문기술실				
	연구원(울산, 대전)				
	인증원				
	화학사고예방센터				
	민간평가센터				
	소계				
안전조치 인력 (B)	중앙사고조사단				
	일선기관				
	소계				
교육훈련 인력 (C)	교육원				
	교육센터(체험교육장)				
	소계				
안전기획 부서인력(D)	본부(전문기술실, 사고조사단 제외)				
	소계				

※ 구분 기준

- 해당 인력을 안전 전담인력으로 포함
- 공단의 2018년, 2019년 【직제규정 시행규칙】 상 정원표와 부서별 업무 분장을 고려하여 구분

Ⅲ. 2018년 안전관리 추진 실적 및 평가

< 평가 결과 >

❖ (주요 성과)

-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통한 대형 인명사고, 이슈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2차 피해 최소화 성과

*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평가(행안부, 2019. 4월)

** 재난관리 유공자 표창(사고조사단 2명, 2018.12월)

- 시설별·사업유형별 안전보건활동 전개 실시로 효율성 제고
- 이사장 직속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운영('19. 5. 1)으로 안전관리 강화

❖ (미흡한 점)

- 공단 시설물 및 직원 사업 수행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 안전관리체계 미구축, 직원 사업 수행시 안전절차 미수립, 안전 예산 반영 미흡

* 최근 5년간 5명의 부상자 발생('18년도 2명 발생)

-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육생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 사전 안전교육 미흡, 안전점검 및 조치 미흡, 사고사례 전파 미흡 등

* 최근 5년간 4명의 부상자 발생('16년도 1명, '17년도 3명 발생)

□ 안전관리 추진 실적

가. 국민과 직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시행

안전관리 목 표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통한 안전보건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목표 정 의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확보를 통한 공단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를 달성	
추진전략	【 ① 】	【 ② 】
개 념 정 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확립을 통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	·내부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대국민 산재예방활동 동력 확보
안전관리 범 위	·사회적 재난(산업재해) ·자연재난(지진 등 자연재해)	·본부 및 전국 30개 일선기관 ·안전체험교육장(5개소)

실행과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재난예방 및 대비 강화 •재난의 신속대응 및 복구지원 강화	•시설·업무유형별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보건활동 전개 •직무 스트레스 예방영역 발굴 등 건강장해 예방활동 전개
실행조직	•(본부) 중앙사고조조사단 •(일선기관) 사업수행 부서	•(본부) 운영지원실, 안전관리단('19년 5월) •(일선기관) 경영지원 부서, 사업총괄부('19년)

○ 중요도를 고려한 안전관리 목표 설정

추진전략	중요도 판단기준
①	•재난의 정도에 따른 우선 대응(2명 이상 사망 또는 3명 이상 사상자 발생 재난)
②	•화재·폭발·중독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연구원, 인증원) •근로자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안전체험교육장)

나. (재난)안전관리 추진 활동

○ 인적재난 관련 대국민 보호체계 구축

< 재해 발생 전(평시) >		< 재해발생 >	< 재해 상황종료 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산업재해 예방활동 -3대 악성사망사고 예방 -기술지원업무 -재정지원업무 -산업재해분석 및 특별 대책수립 -고용부 지원	-안전한국훈련 -지진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 -정전대비훈련 -장마철 점검 -해빙기 점검 -동절기 점검	-정보수집(사고대응 종합상황실) -상황전파 -현장 출동 및 초기대응 -피해현황 파악 -피해 확산범위 예측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또는 주민 대피 등 -경영진 보고	-사고조사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동종유사재해 재발 방지 활동 -사고사례전파 -산재간접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재난예방 및 대비 강화

【예방】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방사업 강화로 중요사고* 전년대비 7건(24.1%) 감소

【대비】고위험 사업장 적기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산재발생요인 저감

○ 재난의 신속대응 및 복구지원 강화

【대응】사고대응 종합시스템 개선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2차 피해 “Zero”

정보수집(2백만건)	사실확인(15,633건)	상황전파(7,756건)	즉시대응(695건)	환 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NDMS) •언론, 뉴스 등	•소방본부/경찰 •사업장	•노동부/행안부 •공단 27개 - 지역본부/지사	•전문가 사고 현장 출동	•사고동향분석 •사고사례전파

- 사망사고(695건) 상황전파 시 **재난대응** 현장출동 및 조사를 통하여 노동자 2차 피해 예방
- ※ 포천열병합발전소 최초 폭발사고(18.8.1명 사망, 4명 부상) 후, 총 3회의 추가 폭발이 있었으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자 Zero 달성.

【복구】노동자 조기 복귀 지원 및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통한 궁금증 해소

- 사망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을 **내부지원** 목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센터 전문프로그램(전문교육, 심리검사, 심리상담, 사후관리) 운영 및 의학적 치료 연계

○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운영 및 공청회 개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중대사고가 발생한 조선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시민, 노동조합, 교수 및 관련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운영('17.11.~'18.04.(완료), '19. 3.~ '19.7.31(운영중))
- ※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하청 사망 5명, 부상 25명), STX조선해양 폭발(하청 사망 4명)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
- ☞ '19년 3월~7월 말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운영 중

다. 내부직원 및 교육생 보호

○ 시설별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보건활동 전개

(연구시설) 화학물질 취급 및 시험기자재 취급 직원 보호 안전보건활동 전개

- 연구원 :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보관 안전수칙 준수 및 매월 점검 실시
- 인증원 : 시험기자재 취급 시 감전 및 화상 등 위험 방지 비상 매뉴얼 운영

(체험교육장) 체험교육장 이용 시설 점검 및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 활동 전개

- 체험교육장 운영 매뉴얼에 따른 시설점검 및 교육생 보호구 착용 등 안전교육 실시

(업무시설) 청사운영 관련 전기·기계설비 및 소방시설 안전보건활동 전개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청사운영 설비 주기적 유지보수를 통한 청사운영 안전성 확보
- E/V점검 등 합동점검 및 소방훈련 실시 등을 통한 시설운영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공단 시설 현황 : 본부 및 일선기관 업무시설 29개소, 연구원 및 인증원 등 연구시설 2개소, 체험교육장 5개소

○ 업무유형별 직원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활동 전개

- 사업 수행 시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개인보호구 지급, 직무스트레스 관리, 특수건강진단 및 직원 운전자 보험 등
- 사고조사단 상황실 교대근무 직원 총원(8명 → 9명)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 주간근무 직원 1명 총원으로 교대제 직원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주52시간 준수

라. 조직·개인별 직무스트레스 예방영역 발굴

○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직무스트레스 예방영역
조 직		• 업무부적응, 시간관리, 의사소통, 성차별,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등
개 인		• 우울, 불안, 성격, 대인관계, 부부문제, 자녀양육 등

- 외부업체와 협업으로 감정노동 등 직무스트레스 검사(479명) 및 심리상담 컨설팅(8명) 실시
- 직무스트레스 예방영역 분석을 통한 체계적 직원 감정노동 보호 활동

○ 특수건강진단 수혜범위 확대로 직원 건강권 확보

- 역학조사 시료 분석 등 실험 및 유해물질 노출위험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 담당 직원 등 특수건강진단 수혜 범위 확대(79명 → 869명, 105백만원 반영)

IV. 2019년 안전관리 추진전략 및 목표

‘국민과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일터 조성

목 표

국민, 임직원 사고 Zero, 안전관리 체계 확립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수							
	부상자수							
안전사고 (국민)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추진과제	세부 실천 사항
①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1.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3.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 4. 안전역량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
② 자율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1.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이행 2.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및 지침 작성 3. 위험성평가 실시 4.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기반 조성
③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1. 안전관리규정 및 세부지침 제정 2. 안전관리 현장 작동성 강화 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4. 아차사고 사례발굴 및 시설물 위험신고 활성화
④ 국민안전 인프라 구축	1. 국민 이용 시설 안전관리 강화 2. 재난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3. 사고조사 전문성 강화 4. 안전 신기술 개발 강화 5. 안전문화 확산

V. 2019년 안전관리 추진 계획

1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축

1.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 추진배경

- 대·내외 안전보건경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단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정부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18. 1.2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및 공포('19. 1.15),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 3.19)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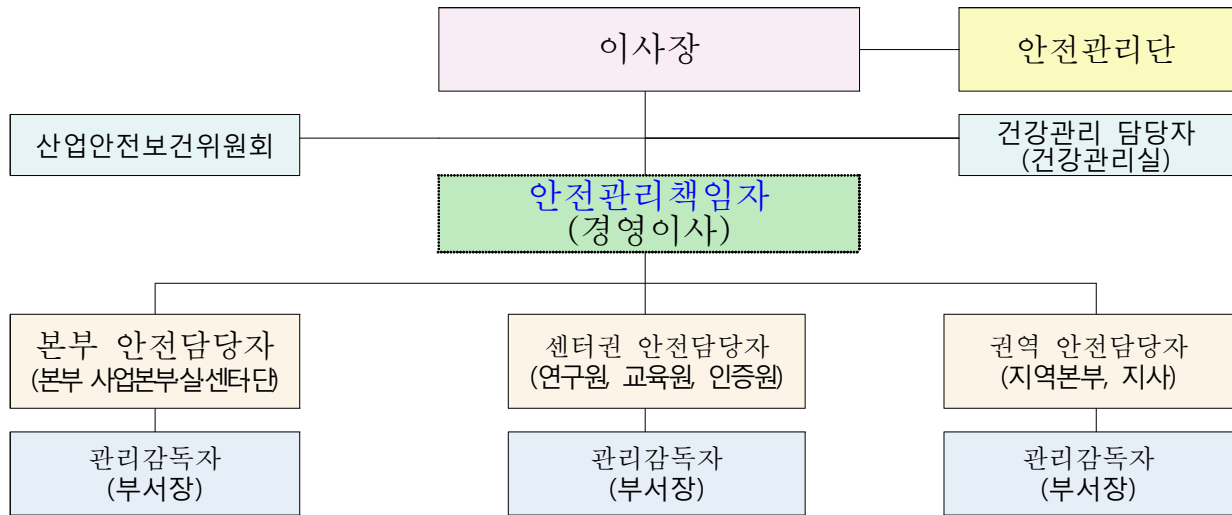
가.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 공단 본부 이사장 직속 안전관리단 신설·운영('19. 5. 1, 3명)
- 안전관리책임자, 일선기관 부문 안전담당자 지정 등 안전관리 체계 신설 구축

나.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경영이사를 공단 안전관리책임자로 하고, 라인-스텝형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라인 조직 : 안전관리책임자, 부문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로 구성하여 안전관리 업무 추진
 - * 부문 안전담당자는 해당 기관(부서)의 주무부장이 해당되며, 관리감독자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해당
 - 스텝 조직 : 안전관리단(이사장 직속), 건강관리 담당자, 청사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

< 공단 안전관리 총괄 조직도 >



청사 안전관리	
시설 담당자	고압가스 담당자
전기안전담당	에너지법 관련 검사 담당자
방화관리자 (소방안전담당)	승강기 안전 담당자

○ 주요 업무

구 분	직 책	주요 업무내용
안전관리책임자	경영이사	· 안전관리 업무 총괄
안전관리단	단장(겸임), 실무자 3명	· 안전관리 업무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환류
부문 안전담당자	본부 사업본부·실·센터·단, 일선기관 주무부장	· 부문 안전관리 업무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관리감독자	부서장	· 수행 사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부서원 안전교육 등
청사 안전관리 담당자	청사 시설관리 담당자	· 시설관리 업무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법정 검사 등 수검

다. 시설안전관리 인력 지정·운영

- 타 법령에서 실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수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지정·운영

< 시설안전관리 인력 현황 >

구분	인력	주요 업무 내용
계		
본부		- 시설물 및 설비 안전 유지관리 점검, 검사, 관리규정 제·개정 주관(소방점검은 위탁 운영)
연구원 (대전)		- 연구시험시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실행 · 화학약품 등 시험실 취급물질 안전조치 · 연구·시험실 시설물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 시험실별 전담자 지정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자체청사 (경남, 대전, 경북, 전남동부)		- 전기·기계·경비·미화·영선 등 분야별 안전관리 · 수변전 설비, 소방설비 관리 및 건축물 오염 방지 등 - 위험요인 발굴 및 시설 개선 · 시설물·소방·승강기·전기감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체험교육장 (경남, 호남, 충부, 경북, 충청, 제천)		- 국민(교육생) 이용 시설에 대한 전기·기계 등 분야별 안전관리 - 위험요인 발굴 및 시설 개선 · 시설물·소방·승강기·전기감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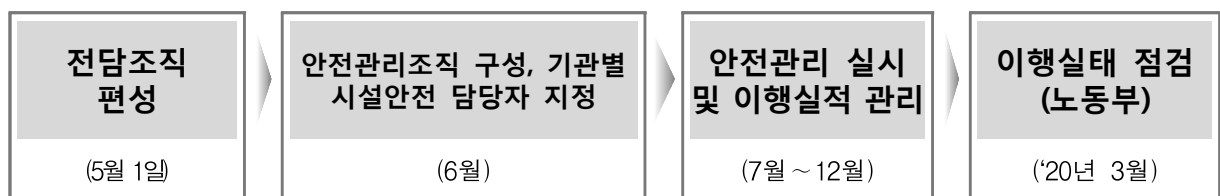
라. 일선기관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 일선기관에서는 ‘본 계획 II. 기본현황 - 5. 안전 전담 조직’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운영

< 센터권, 일선기관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



□ 추진일정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배경

- 공단 시설물, 사업의 안전관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의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 유지 증진 필요성 대두
- 노·사동수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개선안 도출

□ 추진근거

- 단체협약 제65조[안전 및 보건관리] 제3항
*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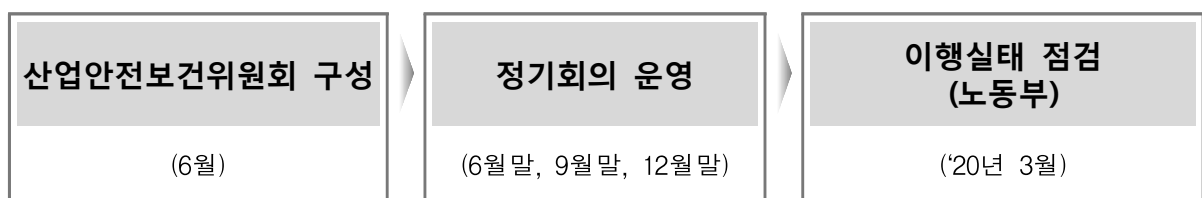
□ 구성 및 운영

- 위원 구성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을 참고하여 구성
 - (노측) 근로자 위원 : 노동조합 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공단 직원
 - (사측) 사용자 위원 : 이사장,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단장 등 9명 이내의 부서장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운영

□ 역할

- 심의 및 의결
 - 공단 시설물의 유해·위험방지 조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안전경영 추진계획, 위험성평가 결과 등의 후속조치 관리

□ 추진일정



3. 안전보건 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배경

-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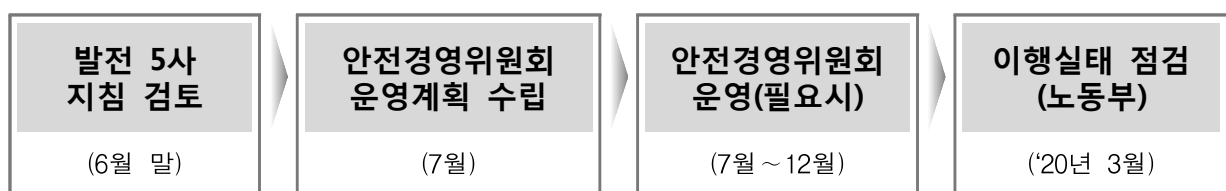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 * 공단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해당되며,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은 비해당 사항임(산업안전과-2107, '19. 5. 8)

□ 추진내용

- 안전보건 경영위원회 구성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전 5사가 운영 중인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추진
 - * 공단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 심의 대상 안전에 관련이 있는 근로자와 각계 전문가를 소집하여 심의 실시
- 위원회 운영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전문가 Pool 구성 등

□ 추진일정



4. 안전역량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추진배경

- 산재발생 형태가 대형화·복합화·집적화되고, 국민들의 안전보건 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공단 직원의 안전보건 전문역량 강화 필요
- 산재예방 사업 수행시 공단 직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

시 사 점

- ✓ 개편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격 및 전문성 보완 조치 시급
- ✓ 명확한 육성 프레임 구축으로 체계적 육성 시스템 마련
- ✓ 유능한 인재의 발굴·성장 기회 부여 및 육성 경로 구축
- ✓ 전문성 확보 및 안전보건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통한 외부 신뢰 회복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9조[안전보건교육]

□ 추진내용

- 안전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내·외부 안전보건 전문성 향상교육 강화
 - 조직인재개발부의 교육계획과 연계하여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경영진, 안전담당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 [참고 2] 공단 내·외부 전문역량강화 교육 일정

- 공단 직원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현장 방문 사업 수행】

- 해당 기관에서 보호구 착용 방법, 차량 운전 안전, 현장 안전점검 시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교대 근무자 안전】 : 중앙사고조사단 사고상황전파 근무자 9명

- 해당 부서에서 VDT 증후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야간 근무 안전 등 교육

【업무직 직원들을 위한 교육 강화】

- 감정노동 종사 직원, 청사관리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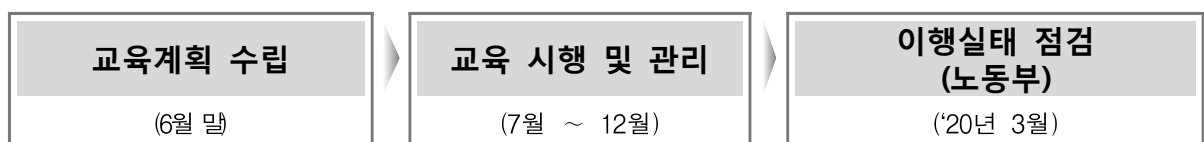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종사 직원 교육 강화】

- 연구원(화학물질센터), 교육원(실습동), 인증원(실험실) 등 종사 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법정 교육시간(16시간)에 준해 실시

【MSDS 교육 강화】

- 센터권(청사 청소), 연구원(화학물질센터), 인증원(제품시험부)의 화학물질 취급 직원들에 대해 산안법 기준 이상으로 교육 실시

□ 추진일정



2 자율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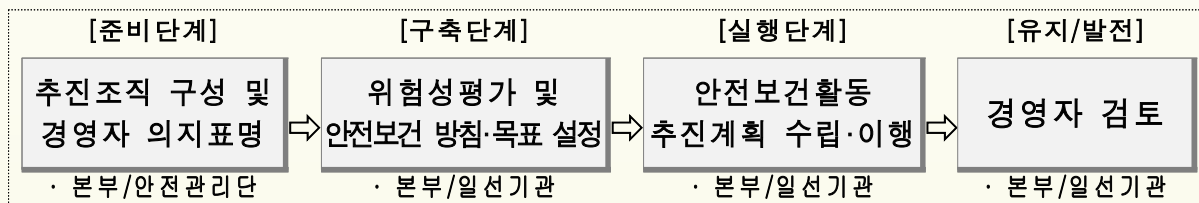
○ 자율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공단의 체계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P(Plan)-D(Do)-C(Check)-A(Action)의 Life cycle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안전보건 개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운영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조]

○ 단계별 추진단계 및 추진일정



추진단계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월)												추진기관
		5	6	7	8	9	10	11	12	1	2	3	4	
준비단계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전담조직 구성		▶											본부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문서관리 절차 검토		▶											본부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최고경영자 의지 표명			▶										본부
	자율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조직원 의식수준 고취			▶										기관별
구축단계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										본부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작성·검토·보완			▶										본부
	산업안전보건법, 그 외 안전관련 법령 검토를 통한 관련법규 등록			▶										기관별
	각 기관별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안 수립 · 기관별 위험성평가팀 구성 및 수행업무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실행(KRAS, JSA, Checklist 등)			▶										기관별 (각부서)
	각 부서별 위험성평가 실시				▶									기관별 (각부서)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안전 보건활동을 위한 세부 절차서·지침서 작성				▶									기관별 (각부서)
실행단계	기관별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기관별 (각부서)
	안전보건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점검 등 성과측정								▶					기관별 (각부서)
	내부심사 실시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개선확인									▶				기관별 (각부서)
유지/발전	경영자 검토회의 및 개선이행, 조직의 안전보건 성과의 파악·환류										▶			본부 (기관별)

1.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이행

□ 추진배경

- 자율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의 의지가 분명히 제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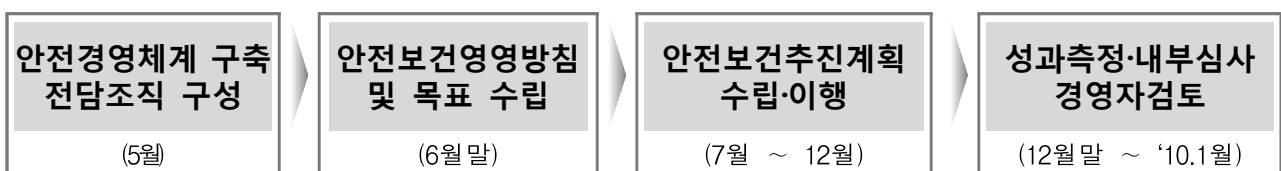
가.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이행

- 공단 내부 조직의 안전보건 위험 특성과 대국민 서비스 업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안전경영방침 수립
- 변화하는 경영과 규제사항들에 효율적인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시키고, 조직의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 경영자 검토회의 및 개선이행, 안전보건 성과 파악·환류
- 산업안전·소방·전기·가스·화학물질 등 안전관련 법령 적용 검토 및 조직의 위험성과약을 통한 안전보건목표 수립(계량화)

나. 전 기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본부 및 일선기관의 수행사업별 안전보건 추진계획, 성과지표 작성 및 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 관계법령, 사업장 적용 안전법규에 근거한 계획 수립
 - 직원 및 체험교육장 등 공단 방문고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기관·부서별)·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 사업장 적용 기술기준에 근거한 계획 수립
-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측정, 내부심사 및 개선확인

□ 추진일정



2.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및 지침 작성

□ 추진배경

- 안전보건경영 방침에 부합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안전보건 경영 추진계획 수립·운영의 원칙과 책임, 절차를 부여하기 위한 매뉴얼 및 지침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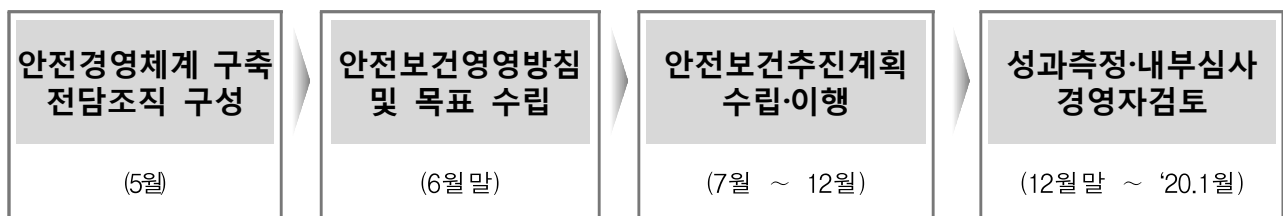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 추진내용

- KOSHA MS, ILO-OSH 2001(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 KS Q ISO45001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작성
 - P-D-C-A 순환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토록
 - “안전보건목표·추진계획-조직구성-위험성평가-기록관리-성과측정-내부심사-경영자 검토-상벌제도” 등의 구성요소로 작성
-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성하여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 추진
-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세부 지침서 작성

□ 추진일정



3. 위험성평가 실시

□ 추진배경

- 대국민 안전서비스 수행상의 위험요소, 공단의 시설물, 기계·기구 및 안전체험교육장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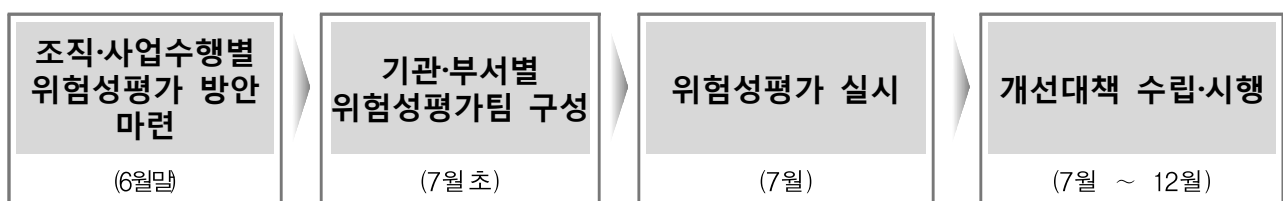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 추진내용

- 사업수행별 위험성이 파악될 수 있는 특성화된 위험성평가 방안 마련
 - 사업수행별 위험성평가팀 구성 및 수행업무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안(4M 기법, JSA, Checklist, HEA 등) 마련
 - 내부직원 및 공단 방문 고객의 부주의는 당연 결과로 반영하여 배후의 요인을 찾을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안 마련
 - 각 기관·부서별 모든 사업에 대하여 기관별 안전담당자, 부서장, 분야별 사업수행직원, 위험성평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 실시
 - 연구원 실험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인증원 안전인증 시험실은 시험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안전절차서 개정 등 Feed back
- 시설물 정비·보수 시 업무직 및 외주업체를 통한 공사 수행 전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평가방법, 개선대책 수립 및 확인 등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후 작업수행

□ 추진일정



4.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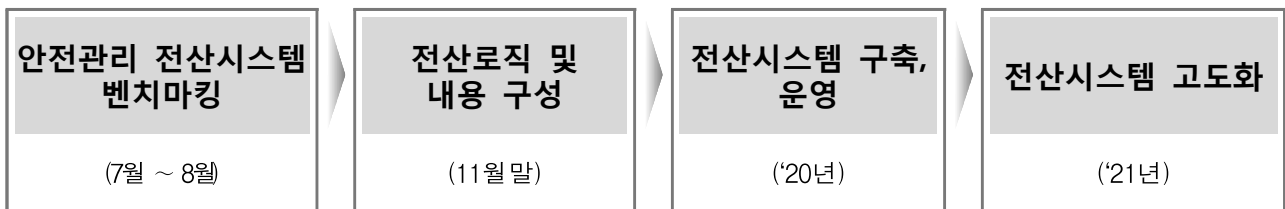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안전관리 이행실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기반 조성

□ 추진내용

- 국내 공공기관, 대기업의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산 로직 구성 등 구축기반 조성
- '19년도에는 전산시스템에 포함될 내용 등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20년도에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 추진일정



3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1. 안전관리규정 및 세부지침 제정

□ 추진배경

-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규정 및 세부 지침 제정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13조(안전관리규정 작성)

□ 추진내용

가. 안전관리규정

- 노동부 표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 제정
- 단체협약, 산안법, 관계 법률 등 법적 요구사항 검토를 통한 서비스 공공기관 등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주요 내용
 -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나. 세부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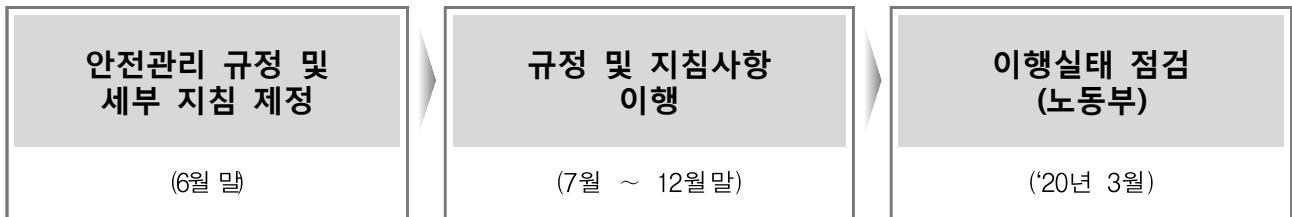
-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 작업을 도출하고 수행작업별 세부 지침 제정
- 주요 지침
 - 공단 직원 산재예방 사업 수행시 안전지침
 - 유해위험작업 분류 지침(2인 1조 수행 작업, 근속년수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 수행 금지 업무 등 기준)
 -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지침, 안전작업허가 지침, 이상기후 발생시 작업 지침, 밀폐공간 안전관리 지침 등
 - 감정노동 및 트라우마 상담 지침 등

다. 제안제도 운영

- 공단 내부 제안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 제안제도에 공단 자체 안전관리 개선분야도 포함됨을 안내

* 제안제도 내부 규정 개정 추진

□ 추진일정



2. 안전관리 현장 작동성 강화

□ 추진배경

- 안전관리규정, 세부 지침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작동성 강화
- 공단 자체 안전보건관리 강화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관리 철저

* 공단 자체 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 수립 T.F 구성·운영계획 알림(2019. 2.11)

□ 추진내용

가. 시설물 안전점검

- 공단 시설물, 국민(교육생) 사용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 경영층 주재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기관장 또는 임원급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점검 기준 반영
 - 시설 위험도를 고려한 점검 실시 : 위험등급제 운영

나. 산재취약 작업 수행 기관

- 산재취약 작업 수행 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

- 대상 기관
 - 연구원 : 화학물질센터 실험실
 - 교육원 : 실습동(크레인, 프레스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
 - 인증원 : 방폭, 보호구, 가설기자재 실험실 등
 - 일선기관 : 출장 직원들에 대한 사고 예방(교통안전, 현장점검 시 안전 등)
- 점검 주기 : 월 1회(기관 자체), 반기 1회(안전관리단)

다. 공단 발주 공사 현장

- 공단 발주 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
 - 대상 작업 : 타워크레인 해체 및 설치 작업, 체험교육장 신축 공사 등
 - 점검 방법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 안전작업허가서 절차 준수 여부,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중점 점검
 - 점검 주기
 - 공사 종료시까지 매일 순회점검(기관 자체)
 - 작업 착수 전, 종료전 점검 등(안전관리단)

라. 산안법 규정 준수

- 유해·위험기계 안전관리 준수 여부 점검 : 방호장치, 안전검사 수검 등
 - 교육원(실습동), 인증원(방폭, 가설기자재), 체험교육장(타워크레인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준수 여부 점검
 - 인증원 시험실 및 연구원 실험실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시

조치사항		시 기	내 용
관리자 선임	유해 화학 물질 관리자	영업허가 및 인사이동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책임자, 점검원)
	취급시설 기술인력	영업허가 및 인사이동 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기술인력 1명
정기 및 수시검사		(정기) 1~2년 (수시) 지정 시	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수검 및 안전진단
개인보호장구 구비·비치		상시	취급물질 특성에 맞는 보호장구 구비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시	MSDS 등 물질표시·취급·관리기준 준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2년마다 (직무별 상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및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기록·관리		상시	화학물질별로 5년간 취급서류 기록·보관

마. 위험도, 중요도를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 사업별 위험등급제 운영

- 유해·위험기계 안전검사, 화학물질 검사 및 진단, PSM 확인, 안전 보건진단, 중대재해조사 등 : 고위험
- 적시 기술지원, 건설현장 점검, 격오지 지역 점검 등 : 중위험
- 자금지원, 서비스, 교육 등 : 일반

○ 보유시설, 기관별 위험등급 운영

- 인증원, 대전 연구원, 체험교육장, 타워크레인 실습장, 폐수처리 시설 유지·보수 작업(밀폐공간작업) 등 : 고위험
- 30년 이상 자체 노후 시설 : 중위험
- 기타 시설 : 일반

○ 세부 점검 내용(안)

구분	시설점검 주기	점검/사업 형태	위험성평가	비고
고위험	월 1회 이상	· 2인 1조 이상 수행 · 6개월 미만 근로자 수행 금지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2인 1조 작업 규정화 · 개선조치 사항 반드시 확인
중위험	1회/2월 이상	· 2인 1조 수행 · 6개월 미만 근로자 수행 금지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개선조치 사항 반드시 확인
일반	분기 1회 이상	1인 사업 수행	안전지침 절차 수행	· 사업수행 시 안전지침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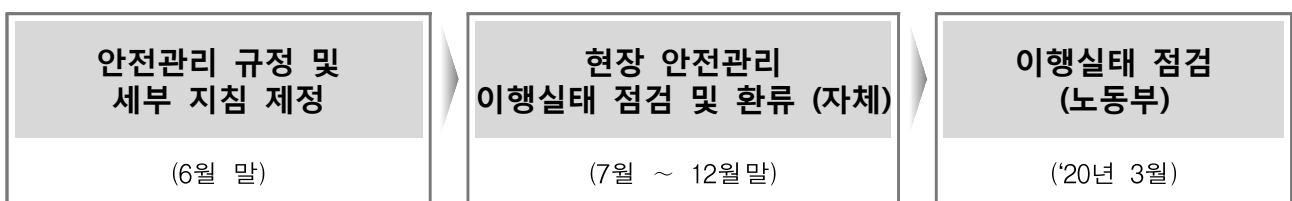
바. 공단 자체 안전보건관리 활동 강화

○ 공단 자체 안전보건관리 강화 과제 이행 및 관리 강화

- 본부 사업부서,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체험교육장 등

** [참고 3] 공단 본부 부서별, 일선기관별 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

□ 추진일정



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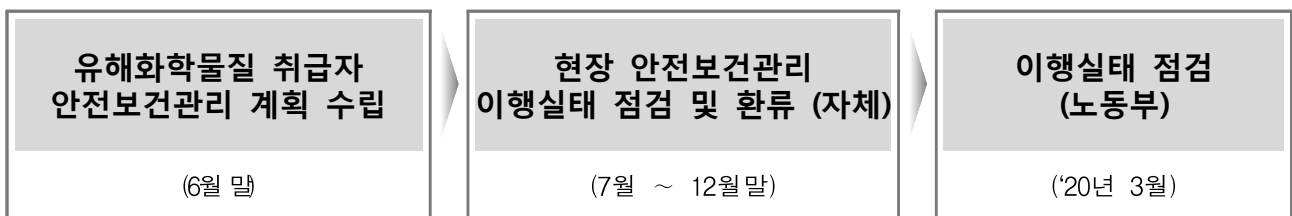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산안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 산안법 제43조(건강진단) - 특수건강검진

□ 추진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관의 화재·폭발·누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점검 강화
 - 연구원 위험성평가부서 및 독성연구부서, 인증원 방폭실험실 등에 대한 방폭구분도 작성, 환기시설 설치,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등 조치
- MSDS 게시, 부착상태 주기적 점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청사 청소를 위한 업무직 직원 포함)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강화
- 보호구 주기적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교대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 (운영지원부 주관)

□ 추진일정



4. 아차사고 사례발굴 및 시설물 위험신고 활성화

□ 추진배경

- 공단 직원 사업 수행시 체험한 아차사고(Near Miss) 사례 발굴 및 공단 시설물의 유해위험상황 신고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재해발생의 근본적 원인 제거

* 수동적인 안전관리에서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으로 개선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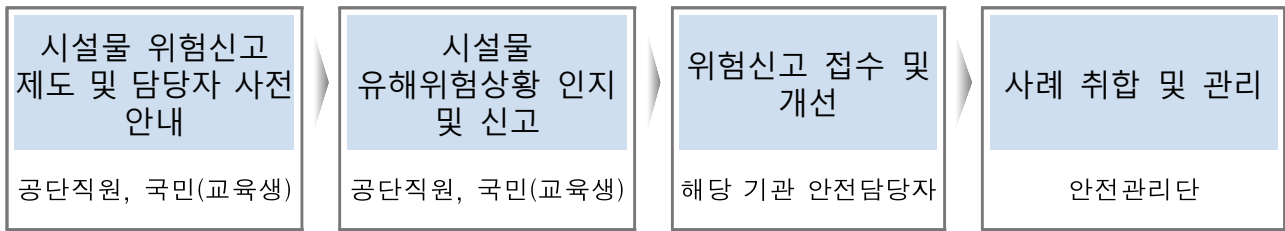
가. 아차사고 사례발굴

- 공단 직원 사업 및 사무 업무 수행시 체험한 아차사고 사례 수집
 - ERP에 아차사고 사례 발굴 방을 마련하여 수시로 사례 수집
 - 사례 발굴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기프티콘 등)을 지급하여 활성화 도모
- 수집된 아차사고 사례를 주기적으로 분석, 개선(안)을 도출하여, Feedback을 통한 공단 사업 수행 지침 등 개정 추진
- 아차사고 사례집 발간
 - 공단 자체 아차사고사례 및 유사 공공기관의 아차사고를 수집하여 아차사고 사례집 발간

나. 시설물 위험신고 제도

-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직원, 국민(교육생)이 확인한 시설물 위험사항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사전에 동 신고제도의 취지, 절차, 처리 담당자 등을 직원, 국민(교육생)에게 안내
 - 위험신고 발굴 임직원, 국민(교육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기프티콘 등)을 지급하여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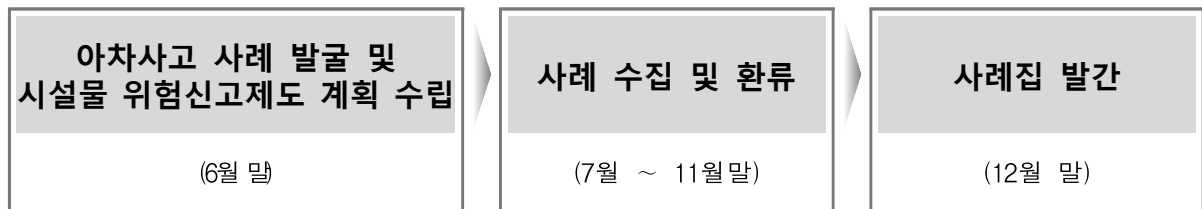
○ 추진 절차



○ 시설물 위험신고 사례집 발간

- 시설물 위험신고 및 처리결과 등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위험신고제도 활성화 도모

□ 추진일정



4 국민안전 인프라 확충

1. 국민 이용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공단 교육원, 일선기관 교육센터, 체험교육장 등을 방문하는 국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교육,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 최근 3년간 공단 교육시설 이용 국민 4명이 사고가 발생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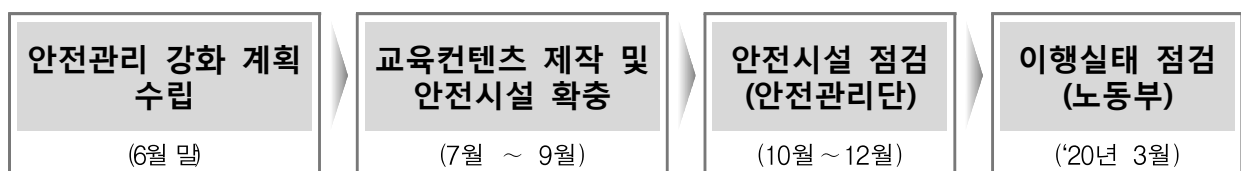
가.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 공단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전 비상대피, 교육 및 실습시 안전절차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1~2분 내외의 동영상 등으로 제작
- 제작 추진
 - 콘텐츠 기획 및 포맷 구성 : 안전관리단
 - 콘텐츠 제작 : 일선기관

나. 시설물 안전시설 확충

- 공단 교육 시설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
 - 교통안전
 - 안전보건표지 설치 : 비상대피 집결지, 서행(10Km), 우선멈춤, 경사로 주차장소에 고임목 비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소방안전 : 소화기 비치, 소화설비 작동 시험 강화 등
 - 시설안전 : 고소장소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정리정돈, 교육생 휴게공간 확보 등
- 센터권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단에서 조치하고 일선기관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추진일정



2. 재난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 추진배경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확립을 통한 재난으로부터 국민 및공단 직원의 안전 확보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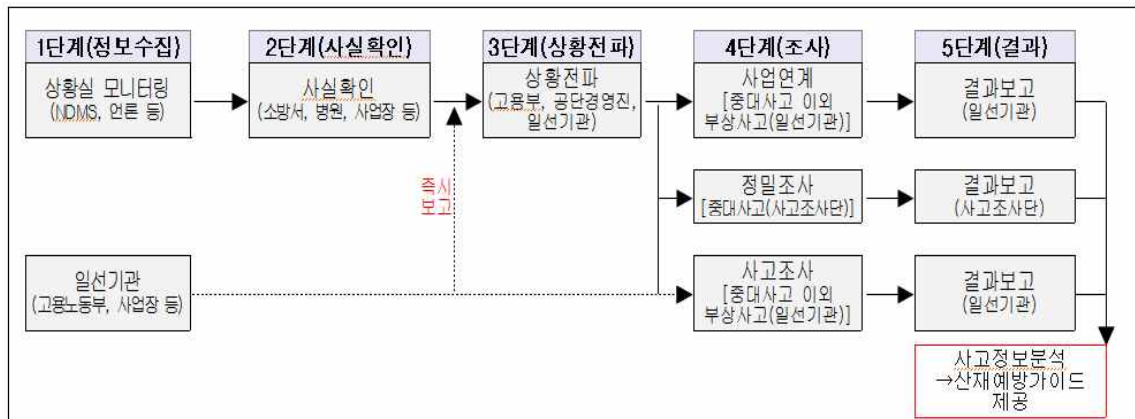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재난관리책임기관),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추진내용

가. 사고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 사고상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상황전파 실시
 -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된 사고상황의 신속한 전파로 2차 피해 예방 등 국민 피해 최소화

<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절차 >



나. 재난 및 위기상황 대응

- 재난관리 평가 수검 : 연 1회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및 평가 수검 : 1회
-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할 수행 : 수시

□ 추진일정

- 사고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 연중 상시(24시간 운영)
- 재난 및 위기상황 대응 : 연중

3. 사고조사 전문성 강화

□ 추진배경

- 사고조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고의 근원적 원인을 규명, 재발방지를 통한 국민 사고예방 필요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24조(사고 기록 및 보존)

□ 추진내용

가. 사고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연수

- 국·내외 사고조사 전문기관 연수를 통한 사고조사 전문성 향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 미국 CSB, JNIOOSH 등 벤치마킹 추진
- 사고조사 실무 학회, 세미나 등 참석
 - 한국법과학회, 안전학회, 위험물 학회 등

나. 일선기관 사고조사 전문가 역량 강화

- 사고조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일선기관 사고조사 전문가 양성 추진(기관별 2명)
 - 근원적 원인 조사기법, 재해조사 실무, 정밀사고조사 참여 등

다. 사고조사 결과 환류 및 공단 사고조사 철저

- 사고조사 결과가 제도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강화
- 공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전문가로 사고조사반을 구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근원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

□ 추진일정

- 사고조사 전문기관 연수 : 수시
- 일선기관 사고조사 전문가 양성 : 5월~11월
- 사고조사 결과 환류 등 : 수시

4. 안전 신기술 개발 강화

□ 추진배경

- 사물인터넷(IOT), 무인화 기술,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 확대 필요성 대두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 추진내용

가. 사물인터넷(IOT) 및 드론 활용

- 중대사고 정밀사고조사 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근원적 원인 규명 실시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 사고지휘 실시
 - 드론을 활용한 사고발생 현장 분석 명확화 및 사각지역 분석
- 드론 활용 교육 지속 실시(한국드론협회와 협업 추진)

나. 안전 신기술 개발

-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연구·개발 자금지원
 - 방호장치·보호구 제품의 안전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한 제조·등록업체 자금지원(소요비용의 50%, 5,000만원 한도)
 -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품질 수준향상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자금 지원 등
- 안전인증 취득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개최
 - 방호장치·보호구 제품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여 양질의 안전보호구 제품생산 유도

다. 안전보건 아이디어 개발

- '19년도 안전 신기술·신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이륜차 배달 플랫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7건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화 검토단계를 거쳐 추진

□ 추진일정

- 사물인터넷 및 드론 활용 : 수시
- 안전 신기술 개발 : 수시
-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 및 신사업 선정 : 4월말

5. 안전문화 확산

□ 추진배경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등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재해예방 활동 내재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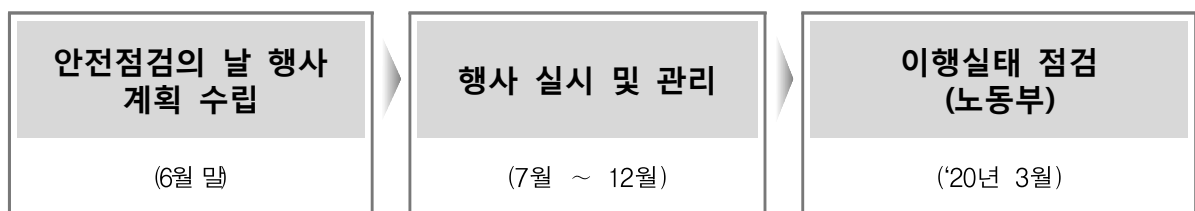
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 경영층이 참여하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통한 안전 문화 확산
 - 사업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 공단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실천 결의대회 실시
- 시설물의 취약한 부분, 밀폐공간 등 안전 사각지대 중점 점검 및 개선 실시

나.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활동 강화

- 공단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소) 및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재난 대응 및 생활안전 캠페인 전개

□ 추진일정



VI. 행정사항

□ 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동 계획의 일선기관 이행사항 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예정)

□ 일선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 일선기관에서는 본부에서 수립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19. 6 월말 시행 예정)을 참고하여 '19년 하반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7월 10일까지 본부 안전관리단으로 제출
- 일선기관에서는 2019년도 안전관리 이행결과를 '20년 1월 10일까지 본부 안전관리단으로 제출

□ 협조사항

- (센터권)『공단 자체 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 계획('19. 2.11)』에 적극 참여
- (전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준수 이행

Ⅶ. 기타

* 안전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정원, 예산, 제도개선 등 구체적 적시)

1 안전 인력 확충

□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검토 전문인력 필요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원적인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결과 점검 등의 확인을 위한 위험성평가 검토* 전문인력 11명 필요

* 검토대상 :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 발생 공공기관

- 소요인력 산출 : 11명

<산출조건>

- ▶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기관 : 29개 기관
- ▶ 공공기관별 평균 19개 사업소 보유, 23개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

- (본사) 위험성평가 계획검토 인력 1명

※ 1명=[29개 기관×2명×2일]÷260일

- (현업/지사) 현장 위험성평가 활동 검토인력 9명

※ 9명=[29개 기관×평균 19개 사업소×2명×2일]÷260일

- (공공발주)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활동 검토인력 1명

※ 1명=[23개 기관×8개 현장(발주금액 4개 구간별 2개 현장)×2명×1일]÷260일

참고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현황

○ 공단 전체 사업장 : 38개소

구 분		소재지	인 원	안전관리 전담인원
업 무 시 설 (29)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북정동)	258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북정동)	50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8층)	7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33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28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22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부곡동) 4~7층	95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2, 4층	47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53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29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59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청사 4층	34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18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23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31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20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10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48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27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층,13층	71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2층	48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28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60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2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37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29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60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KT 3층	53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54	
연구 시설 (3)	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북정동)	85	
	인증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30	60	
	인증원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북정동)	50	
체험 교육장 (6)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454번길	4	
	호남	전남 담양군 금성면 병목로 219	3	
	충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2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10	3	
	충청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1714-77	3	
	제천	충북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	8	

□ 공단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illegible]

참고 2

공단 내·외부 전문역량강화 교육 일정 등

○ 내부교육

구분	교육 내용	시기	시간	주관	대상	방법
사업안내 교육	• 사업 안내 교육 신규 - 각 사업별 추진 사항 및 절차, 방법 등 안내 교육	수시	회당 30분 이내	각 사업본부·실·소 등	전 직원	이러닝
사업 자격교육	• 사업 자격 교육 신규 - 위험성평가 등 12종	5~10월	5일 이내	조직인재 개발부	3~5급	집체/이러닝
전문기술 전수교육	• 전문기술 전수 교육 신규 - 사고조사, 안전보건진단 등 전문기술 및 노하우 전수	수시	별도 설정	각 사업본부·실·소 등	3~5급	집체/OJT
전문가 양성교육	• 전문가 양성 교육 신규 - 별도 계획 추후 시달	미정	미정	조직인재 개발부	3~5급	미정
내부(교육원) 전문화 교육	• 내부 전문화 교육 개선 - 교육원 전문화 및 이러닝 교육과정	5~12월	개별 교육 시간		3~5급	집체/이러닝

○ 외부교육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외부 전문화 교육

구분	교육 내용	시기	기간	주관	대상	방법
최고 경영자 과정	• 안전보건 최고 경영자 과정 - 안전보건경영전략, 리더십, 노사관계 역량 함양 (가톨릭대, 울산대 위탁교육)	4월~12월	22주~23주	조직 인재개발부	2급 이상 공모선발 (2명)	위탁
국내 단기위탁교육	• 국내 단기위탁 교육 - 서울대 및 부산대 공기업 고급경영자, 공공 리더십,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연중	1년		3급 이상 공모선발 (18명)	위탁
국내 학위과정	• 국내 학위 과정 -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사·석사·박사 위탁 교육 과정	연중	2년~4년6월		공모선발 (학사 10명 석사 8명 박사 4명)	위탁
사내 안전보건 전문학과	• 사내 안전보건전문학과 - 울산대 안전보건전문 계약학과(석사·박사) 위탁 교육 과정	연중	2년		공모선발 (석사 7명, 박사 3명)	위탁
학위과정 장기국외연수	• 학위과정 장기국외 연수 - 국외 대학 및 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	연중	2년 이내		공모선발 (2명)	위탁
이러닝 교육	• 이러닝 교육 - 어학·경영·OA 등 자기개발 및 다분야 전문성 향상 과정	8~12월	1주 내외		전 직원 신청선발	위탁
산업현장 위탁교육	• 산업현장 위탁교육 - 국내외 선진기술 위탁교육	수시	1주~6개월	각 사업본부·실·소 등	별도 선발	집체

○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비 고
특별안전· 보건교육	- 16시간 이상(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실시 가능
물질 안전 보건자료교육	- 교육시간 기준은 없으며, 실시한 교육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화학물질 취급하는 근로자 대상

[참 고]

-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해주므로 다른 교육방식(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혼합교육 필요
- 특별교육의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까지만 인정해 주므로 다른 교육방식(집체교육, 현장교육)과 혼합교육 필요

□ 교육 추진일정

구분	교육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공통 역량	법정교육										
	정책교육										
	인문소양교육										
새내기 교육	입문교육	별도 계획 시달									
재직자 교육	직무 역량 교육	사업안내교육									
		사업자격교육									
		전문기술 전수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별도 계획 시달								
		내부(교육원) 전문화 교육									
		외부 직무교육									
	직급 역량	산업현장 위탁교육									
		고급관리자 전문화교육									
		조직역량 강화교육									
		장기휴직 복귀자 교육	미 정(하반기 중)								
		여성관리자 양성 교육	미 정(인사관리부 주관)								
		안전보건 최고 경영자									
	외부 위탁	국내 단기위탁교육									
		국내 학위 과정									
		사내 안전보건전문학과									
		학위과정 장기 해외 연수									
		이러닝 교육									
		이러닝 교육									
퇴직 예정자 교육	재해예방 최고전문가 Vision-up 교육										
	2nd Life Planning										
	자기 주도 학습										

□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